4 소비자의 선택은 안전한 축산물

김대균 수의사무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금 전세계는 가축질병 발생에서 비롯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여기에서 유래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병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듯 하다.

198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생보고된 소해면상뇌증(BSE)은 영국 및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한 이래 2001년에는 일본에서, 2002년 이스라엘이, 2003년에는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발생되는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먹거리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 특히 소해면상뇌증은 인간의 vCJD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BSE의 확산 속도에 비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양계산업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던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는 급기야 베트남 등지에서는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또한 '90년대말 대만을 시작으로 영국등지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구제역은 2000년들어 우리나라에 발생하여 축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다. 아울러 축산물에 의한 위해는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고로 이어져 이에 대한 안전성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인 신종유해물질의 확산과 O-157:H7 등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위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캐나다 및 미국의 BSE 발생 관련 쇠고기 및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은 실질적인 위험 이상으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외면에 따른 전체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축산농가를 포함한 관련산업이 크게 쇠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의 국제교역환경은 자유로운 무역을 향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입축산물에 의한 국내축산업의 쇠퇴와 규모감소 등 내외적 요인들이 우리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이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구축

축산물은 가축의 생산, 사육, 도축, 가공처리, 유통, 판매의 각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특히 축산물에 잔류하는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은 미생물과 달리 대부분 가축의 사육단계에서 우려하고 있어 사육기간중 동물약품의 투여 또는 항생제 등이 첨가된 사료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국가잔류물질검사(National Residue Program)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 · 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 ·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약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표 1〉).

우리나라에서 그간 검사하여온 실적을 보면 외국에 비하여 결코 적지않은 많은 양을

<표 1> 우리나라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허용기준 위반율

구분	'00	'01	'02	'03.3/4
검사량(건)	70,213	102,824	105,720	88,570
위반건수(건)	75	177	145	202
위반율(%)	0.11	0.17	0.14	0.23

<표 2> 외국의 잔류물질 검사 결과 위반율('00)

구분	미국	호주	일본
검사량(건)	33,648	15,828	7,516
위반건수(건)	154	34	4
위반율(%)	0.46	0.21	0.05

검사하여 왔으며, 정부의 홍보와 농가의 안전의식고취로 외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위반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2〉).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양관리 기술과 항생제 등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지도 · 교육을 강화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양축농가는 가축질병발생 방지를 위하여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항생물질 등 동물약품의 임의사용을 제한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항생제 등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외래성질병의 재발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축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사람, 차량 등 발생 전파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사육단계에서의 질병예방과 국가잔류물질검사계획 등 건강한 가축생산의 기반 확보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 유통단계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기준 준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 공급을 위하여 사전 · 사후, 중앙 · 지방 등 이중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과학적인 축산물 위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등 위생감시와 자율적인 위생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사전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관리프로그램인 위생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SOP)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감시를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감시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 축산물위생감시

정부에서는 '97년 축산물위생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이후 매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감시지침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감시방법과 기준지침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중앙감시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별 위생감시 등 이중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구성되어 있으며, 도축 및 가공, 운반, 판매단계 등 각 단계별로 도축장 176개소 등 약 5만8,000여개소의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표 3〉).

<표 3> 전국의 축산물작업장 현황

(단위: 개소, '02.12.31 기준)

합 계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57,815	176		56	2,575		145	895	53,968	
	포유류	115		식육	2,315			식 육	46,423
	가금류	61		유	166			부산물	847
				알	94			수 입	1,340
								우유류	5,218

또한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와 함께 축산물가공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한해 약 6,800여건을 수거검사(〈표 4〉)하여 27건이 부적합처분되었으며, 부적합업소는 해당 시 · 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다.

<표 4>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현황

(단위: 건, 2003년도)

구 분	계			유가공품			식육 · 알가공품			식육 및 원유		
	실적	부적합	비율(%)	실적	부적합	비율(%)	실적	부적합	비율(%)	실적	부적합	비율(%)
합 계	6,860	27	0.39	1,735	7	0.40	3,441	18	0.52	1,684	2	0.12
검역원	845	6	0.71	377	3	0.80	468	3	0.64	-	-	-
시 · 도	6,015	21	0.35	1,358	4	0.29	2,973	15	0.01	1,684	2	0.12

검사결과를 보면 식육가공품이 유가공품 등에 비하여 부적합율이 약간 높으며, 중앙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검역원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율이 시 · 도의 부적합율을 약 2배 정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이중감시체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표 5〉에서 보듯이 축산물수거검사 결과 매년 위반율은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를 위한 축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간 추진하여온 위감관리와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HACCP 적용업소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등에 따라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등

<표 5> 연도별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실적	부적합	비율(%)	실적	부적합	비율(%)	실적	부적합	비율(%)	실적	부적합	비율(%)
합계	7,445	49	0.66	6,803	34	0.50	6,643	17	0.3	6,860	27	0.39
검역원	1,307	19	1.45	1,222	16	1.31	1,112	10	1.0	845	6	0.71
시·도	6,138	30	0.49	5,581	18	0.32	5,531	7	0.2	6,015	21	0.35

사후위생감시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사전위생관리 프로그램인 SSOP 의무적용 및 HACCP 적용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위생감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생감시에도 작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위생감시 정보시스템을 확대하여 전국의 축산물작업장 및 생산품에 대하여 전산망을 통한 일괄관리체계를 갖춘 완벽한 위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되도록 할 것이다.

나. HACCP시행을 통한 위생관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과학적인 선진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시행하였다.

1997년 축산물가공처법을 전문개정하여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한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를 도입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대하여는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운용토록 의무 적용하였다. 위생관리기준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에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에 축산물의 직접적인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기준서로 작성하여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작성·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인 위생관리 기법으로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도축장에 대하여는 HACCP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하였으며 2003년 6월말까지 도축장규모별로 HACCP를 적용토록 하였다. 도축장과 달리 축산물가공장에 대하여는 희망업체에 한하여 지정·적용 토록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선호 등에 부응하고자 대다수의 업체들이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축산물운반업 및 판매업에 대하여도 SSOP를 의무시행토록 하

고, 유통판매단계 등에도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일관된 위생관리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HACCP 주관기관으로서 HACCP를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 등에서 조기정착 및 적용확대를 위하여 HACCP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강화, HACCP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소비자의 선택

HACCP 지정업체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축산물생산프로그램에 따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축산물을 선택할 때 정부의 HACCP인증마크가 부착된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감시와 자율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 외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식육가공 · 유가공 등 분야별 축산물 위생관리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걸맞게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하였듯이 정부에서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부분에 걸쳐 안전축산물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마련하여 놓았다고 본다.

이를 준수하여 제대로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아울러 유통의 마지막 종착지인 소비자가 소비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는 거꾸로 판매 · 가공 · 도축 · 생산자 등으로 역류할 것은 자명하다.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 축산물이 유통될 경우 그에 따른 1차 피해자는 소비자가 되겠지만 소비자가 외면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와 가공 ·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피해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축 사육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축산식품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